

국제환경법상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

-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중심으로 -

서원상*

Legal Status of Korea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Mainl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Won-Sang Seo

국문요약 ■

ABSTRACT ■

I. 머리말 : 지구환경체제와 선진국·개도국 문제 ■

II. 국제환경법상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화 ■

III. 국제법상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별기준 ■

IV.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 평가 ■

V. 맺음말 :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 및 정책적 선택 ■

참고문헌 ■

국문 요약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 주제어 | 국제환경법, 차별적 공동책임, 최빈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자기선택의 원칙**Abstract**

Because the resul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f one state is not limited to the national border but spills over into neighboring countries or global environ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vironment are crucial in domestic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emands differential obliga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is the principle that draws distinc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bout global environmental issues, while recognizing the common responsibilit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all nations.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or financial support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for example, has been discussed.

The problem is the status of Korea. Kor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will be different by the distinction of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tatu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communities have never established a clear standard distinguishing developed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ny international laws. The WTO entrusts each country to decide whether it is a developing country or no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status of a country is determined by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status of Korea, thus, cannot be fixed in general international law. Rather, the Korean government is able to choose its own status strategically.

It can be a policy choice to insist that Korea's developing country so as to reduce the burden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ut, considering an economic indicato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dicator at which Korea ranks about 10th, the reality of Korea is much closer to a developed country. Positive policies such a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and products should be preferred to defensive assertion of developing country.

Keywords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least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ies, developed countries, self-selection principle

I 머리말 : 지구환경체제와 선진국·개도국 문제

1960년대에 Rachel L. Carson이 그의 저서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 이래로, 국제사회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지구온난화와 자원의 고갈 등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고,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의해 전세계에 전파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¹⁾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하 리우선언), 2002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선언」(이하 요하네스버그선언)은 물론 각종 국제환경협약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2005년 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2006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국회통과 등 국내 법제도 및 정책의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생물다양성, 삼림보호, 오존층보존,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환경보호의 필요에 관한 원칙적 합의로부터 구체적인 환경의무 및 그 강제성을 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는 환경의무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기 때문이며, 큰 틀에서 보면 선진국(developed countries)과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간 의견대립의 구도로 발전하였다.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 단계에서 개도국의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부족은 동일한 환경기준·환경의무의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동일한 선상에서 국제환경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 후진국의 빈곤탈피와 기술발전이 선결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선

1)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용어를 우리말로 옮김에 있어, sustainable을 '지속적', '지탱 가능한', '지속 가능한' 등으로, development를 '개발', '발전', '성장' 등으로 하여 다양한 조합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기관명 또는 법률명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필자 또한 이를 따르도록 한다. 다만, WCED가 보호해야 하는 'environment'와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development' 간의 균형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이라는 의미의 통 개념을 언급하였음을 감안한다면(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 Press, 43p.) 'development'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광범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발전'(發展: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보다는 '개발'(開發: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개척하여 유용하게 만들,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이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국의 개도국 그룹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는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²⁾ 개념이 국제환경법의 하나의 원칙으로 논의되어 왔다. 문제의 초점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제의무를 법적으로 차별화(differentiation)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별 기준이 무엇인가에 있다. 전자는 앞에서 언급한 차별적 공동책임의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상이한 의무를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지위는 무엇이고 그에 따르는 국제환경의무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에 국제환경법상 법적 지위는 국내 법제 및 정책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아래에서는 국제환경법상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별적 지위 및 차별화의 법적 타당성을 살펴본 후, 국제법상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별기준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를 밝혀 이에 적합한 대외전략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국제환경법상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화

1.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화에 관한 국제합의

국가주권의 평등은 국제법의 헌법적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³⁾ 주권 개념 및 주권평등의 원칙이 현대 국제환경법 분야에서도 중심개념으로 인식되면서도, 그 개념적·실질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⁴⁾ 지구환경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법 주체인 국가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의무를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주요 국제환경문서에서 아래와 같이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2)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는 일반적으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또는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차별적 공동책임' 등의 용어로 국내문헌에 소개되고 있다. 개념상 지구환경보호가 국제사회 구성원의 공동책임이나 환경순상에 대한 역사적 책임 및 국제환경 의무의 이행능력을 감안하여 차별화한다는 것 이므로, 필자는 동 개념을 공동책임이라는 궁극적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차별적 법리를 필요로 한다는 수단적 가치의 결합구도로 보아 공동책임을 차별적 책임이 수식하는 형태의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같은 생각: 김정균, 성재호. 2006. 「국제법」, 박영사. 506-507.

3) Brownlie, I. 199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 Press, p.289.

4) Rossi, C.R. 1993. *Equity and International Law - A Legal Realist Approach to the Legal Process of International Decisionmaking*. Transnational Publishers, p.255.

1)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배려

국제환경협약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 내지는 선진국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기에 앞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도국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이다. 실제로 각종 국제환경문서들이 예외 없이 개도국에 대한 배려에 합의하고 있다.

특히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선언」(이하 스톡홀름선언)은 매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개도국에서는 환경문제의 대부분이 저개발로부터 생기고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충분한 음식, 의복, 주거, 교육, 건강, 위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최저 수준을 훨씬 밑도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도국은 개발의 우선 순위와 환경의 보전, 개선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진공업국은 자신들과 개도국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국제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배려는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선언한 후,⁵⁾ 모든 국가의 환경정책은 개도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개발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포함시켰다.⁶⁾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이하 몬트리올의정서)는 전문에서 개도국의 필요에 특히 유의할 것을 밝히고, 제5조에서는 ‘개도국의 특수사정’이라는 제목하에 “개도국인 당사자는 자기 나라에 대한 의정서 발효일 또는 그 후 의정서 발효일부터 10년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규제물질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가 0.3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기본적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규정한 규제조치의 준수를 이 조항들이 정한 연도로부터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조약의 적용에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의 “유해폐기물 및 여타 폐기물을 관리하는 개도국들의 제한된 능력을 또한 고려하며”라는 규정,⁷⁾ 「환경과 개발에 관한 북경각료선언」(이하 북경선언)의 “개도국의 특별한 상황과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는 규정,⁸⁾ 「세계 삼림의 경영·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제 원칙성명」(이하 삼림원칙성명)의 “개도국이 삼림자원을 보다 잘 경영·보전·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5) 스톡홀름선언 전문4.

6) 스톡홀름선언 원칙11.

7) 바젤협약 전문.

8) 북경선언 원칙4.

배양하기 위하여” 또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사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규정⁹⁾ 등이 모두 당사국 간에 선진국과 다른 개도국이라는 그룹을 상정하여 이들을 배려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심각한 한발(旱魃)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사막화방지협약) 역시 “당사국은 피해개도국, 특히 극빈개도국의 특별한 필요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원칙으로서 선언하고 있다.¹⁰⁾

2)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은 “선진국들은 그들이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인식한다”고 선언하였다.¹¹⁾ 이 문구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규정한 원칙7의 일부로서, 차별적 공동책임의 이행수단이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협상과정에서 책임 또는 의무 차별화의 대상으로서 개도국이 선진국에게 요구한 것이 환경기술의 이전과 의무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의 문제였다.

첫째로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에 관하여 스톡홀름선언 원칙9, 원칙12, 원칙20, 몬트리올의정서 전문, 제5조 2항, 제10조, 바젤협약 제10조 2항 d, 북경선언 일반원칙8, 일반원칙9, 기후변화협약 제4조 5항,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제1조, 제16조, 삼림원칙성명 원칙11, 교토의정서 제3조, 제10조, 제11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Agenda 21은 제34장에서 기술이전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문제의 경우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논리가 서로 다른 상태에 놓여 있어 그 구체적 이행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기술의 이전은 선진국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WTO 지적재산권협정과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강제적인 의무적 성격을 담기보다는 선진국의 협력과 노력을 촉구하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참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국제환경협약에 앞서 여타 국제법 분야에서도 기술이전문제가 언급된 바 있었는데, 1968년에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The Nuclear Non-Proliferation

9) 삼림원칙성명 원칙9의 a, 원칙 11.

10) 사막화방지협약 제3조 d.

11) 리우선언 원칙7.

Treaty: NPT)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당근으로서 기술이전을 협약 체제에 도입한 이래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이전 관련 논의가 계속되었으나,¹²⁾ UN해양법협약 협상 중 심해저개발 기술이전 조항 삽입의 합의에 실패하였고,¹³⁾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서도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법의 쟁점으로 인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둘째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은 스톡홀름선언 전문7, 원칙9, 원칙12, 몬트리올의정서 제5조 3항, 바젤협약 제14조, 북경선언 일반원칙8, 일반원칙9, 기후변화협약 제4조 3항 및 4항,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제1조, 제20조, 삼림원칙성명 원칙7, 원칙10, 교토의정서 제11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Agenda 21은 제33장에서 재정지원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재정지원 관련 내용의 특색은 단순히 자금의 이동을 규정하기보다는 자금의 목적이 환경기술 이전 및 개발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적인 재정원조가 아닌 별도 기금(Fund)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은 같은 조항에서 함께 언급되거나, 앞뒤로 연이어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주요 환경조약을 보면 개도국들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재정보금은 UN환경계획(UNEP) 환경기금 및 1970년대의 세계유산기금 등 긴 역사를 가진다.¹⁴⁾ 1990년에는 ⑦지구기후변화의 위험감소, ⑧생물다양성의 보존, ⑨오존층 파괴의 방지, ⑩국제수역의 보호 등 4가지 사업부문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1990년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이 설립되어 기후변화협약 · 생물다양성협약 · 사막화방지협약하에 지원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지구생물다양성보존기금(Global Biodiversity Conservation Fund: GBCF)으로 불리는 특별재정지원제도가 마련되어 기술이전 문제까지도 관장하고 있다.¹⁵⁾

12) Alberts, 1992. "Technology Transfer and its Ro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 Structural Dilemma"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6: 66-68.

13) Antrum, S.L. and J. Sebenius, 1983. "Incentives for Ocean Mining under the Convention" In Oxman, B. et al. (eds.) *Law of the Sea: U.S. Policy Dilemma*, ICS Press.

14) See CISDL.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rigins and Scope" A CISDL Legal Brief(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http://www.cisdl.org/pdf/brief_common.pdf
(2007년 10월 31일 최종검색)

15) OECD. 1994.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Concepts. COM/ENV/TD(93)117/REV2, para.16.

2. 차별화의 법적 타당성

앞에서 기술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제환경법상 차별화는 국제환경선언에서 언급되거나 국제환경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 비교적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데, 이러한 논의는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국제환경법원칙 논의로 귀결된다.

1) 차별적 공동책임의 개념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이란 지구공동체가 모든 국가의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되, 그들의 책임에 있어서는 역사적 책임, 기술 능력, 미래의 환경추세, 모든 국가들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다시 말해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¹⁷⁾ 국제환경법 규범의 발전과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특별한 요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은 환경보호가 모든 국가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사실에 더하여 각 국가가 처한 상황, 그동안 각 국가가 환경에 미친 영향 그리고 환경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할 수 있는 능력, 특히 개도국의 장래 경제개발 필요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책임이 부과된다는 두 가지 내용을 그 핵심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전자가 모든 국가로부터 수락되고 있다는 면에서 논의의 중점은 후자에 있다고 하겠다.¹⁹⁾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모든 국가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조치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국가별로 차별적인 의무(different commitments)를 부과하는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²⁰⁾

16) French, D. 2000. "Developing Stat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49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p.35.

17) See CISDL, *op. cit.*

18) Philippe Sands, 1995.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Emerging Legal Principle" In Lang, W. (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Graham & Trotman, p.63.

19) 이재곤. 1999. "스톡홀름환경선언, 세계자연현장 및 리우환경선언의 국제환경법적 비교연구" 「법학연구」 9(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96.

20) Sands, P. 1994.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 Introductory Overview" In Sands, P.(ed.) *Greening International Law*. The New Press. 34-35.

차별적 공동책임은 내용상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하나는 국내적·지역적·세계적 환경보호는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공동책임이고, 또 하나는 각국의 특별한 환경문제 해결에 직면하였을 경우 경제적·사회적·기타 정황의 차이와 특히 환경위협의 방지·제거·통제 등에 관한 책임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 간의 책임과 의무를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차별적 책임이다.²¹⁾ 후자는 역사적 환경손상 책임과 환경손상 방지 및 회복조치 능력에 초점을 두어 책임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특히 리우선언(원칙7) 및 기후변화협약(제3조)을 통하여 차별적 책임이 승인된 것은 환경 및 개발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하여 제공하는 자원이전(*transfer of resources*)의 성격을 단순히 원조나 지원이라기보다 의무로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여 주었고, 국가들의 상이한 능력과 각국의 환경악화에 대한 상이한 책임에 비추어 상이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두 가지 큰 의의를 갖는다.²²⁾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구체적 용어가 명시된 것은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이후의 일이었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도국들은 이러한 원칙을 내용상 합의하고 있었다. 1991년 개도국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북경선언은 “우리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전 지구적 노력에 차별적 책임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한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에 대하여 엄숙히 서약한다”고 선언하였다.²³⁾ 이를 토대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상이 이루어 진 결과, 리우선언에서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한 제각기 다른 책임을 고려하여, 각 국가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가진다”고 선언하였고,²⁴⁾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의 세계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차별적 공동책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능력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국제적 대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붙인 후,²⁵⁾ 제3조(원칙)에서는 형평, 세대 간 형평과 함께 차별적 공동책임을 협약 전체의 원칙으로서 재확인한 데 이어, 제4조(약속사항)의 이행에 있어서도 자국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에 의거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⁶⁾

21) Sands, *supra* note 18, p.64.

22) Porras, I. 1994. “The Rio Declaration : A New Basi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ands, P.(ed.) *Greening International Law*. The New Press, p.29.

23) 북경선언 전문(2).

24) 리우선언 원칙7.

25) 기후변화협약 전문.

26) 기후변화협약 제3조 1항, 제4조 1항.

2) 차별적 공동책임의 법적 타당근거

차별적 공동책임이 몇몇 국제협약과 국제선언문을 통하여 법원칙으로서 확인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법원성을 의심하거나²⁷⁾ 내용의 타당성을 부인하려는 견해 또한 없지 않다. Christopher C. Joyner는 “향후 환경오염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질문에 차별적 공동책임은 “오염에 가담하였던 국가들의 역사적 책임”이라는 답을 제시한다고 비판했고,²⁸⁾ Weisslitz는 기후변화협약이 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을 허여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적 공동책임이 회복불가능한 정도의 환경훼손 위험을 망각하게 하는 근시안적 편견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²⁹⁾ 또한 Susan Biniaz는 첫째, 원칙의 개념에 관한 합의가 없고, 둘째, 언제 적용되는지 역시 합의된 바 없으며, 셋째, 원칙이 지나치게 많은 언쟁을 유발하고, 넷째 교섭의 진행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은 국제환경 논의에 있어 불필요한 존재라고 폄하하면서, 리우선언 원칙7 문장의 모호성을 꼬집기도 하였다.³⁰⁾

그러나 국제환경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평(equity)에 의할 것이 요구되는 바, 차별적 공동책임 역시 법의 일반원칙인 형평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¹⁾ 현재 국제법상 형평의 개념이 뚜렷하게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개념정의를 위한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법법원(ICJ)은 형평이란 정의의 개념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법적 개념으로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로서 작용하며,³²⁾ 법의 엄격한 적용으로부터 초래되는 불공정성을 교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³⁾ 그리고 I. Brownlie는 ‘보다 확립된 법규의 분별 있는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정책의 고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³⁴⁾ 또한 T. Franck는 1969년 대륙붕경계획정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형평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지리학적·지질학적·지형학적·경제적·정치적·

27) 노명준. 2003. 「국제환경법」 박영사. 88-89.

28) A.S.I.L., 2002.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oceedings of the Ninety-Sixth Annual Meeting of the A.S.I.L.*, p.358.

29) Weisslitz, M. 2002. "Rethinking the Equitabl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Differential versus Absolute Norms of Compliance and Contribution in the Global Climate Change Context"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Policy* 13: p.477.

30) A.S.I.L., *op. cit.*, p.361.

31) Sands, P. 2003.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 Press. p.285.

32) ICJ Report 1982, p.60, para. 71.

33) ICJ Report 1969, p.49, paras. 89, 91.

34) Brownlie, *op. cit.*, p.27.

전술적·외교적·과학적 다양성을 모두 고려한 객관적 기준으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⁵⁾ 실제로 다수의 문헌에서 형평(equity), 정의(justice), 공정성(fairness) 등은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어 반복적인 정의가 명쾌할 수는 없지만 형평 개념의 법적 의의는 공정성에 따라 제시되는 정의로서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무엇이 공정한가에 기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 즉, 특정 규정의 획일적인 적용이라는 형식적 평등이 아닌 구체적 사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평등으로서의 정의이어야 한다.

국제환경법의 대명제인 지속가능발전에 세대 간 형평과 세대 내 형평이라는 형평 개념이 녹아 있듯이, 차별적 공동책임 역시 형평 개념을 담고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출발선에서 지구환경논의를 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형평의 고려가 필수적인 것이다. 즉 국제환경보호가 모든 국가들의 공동책임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환경법의 이행에 있어 그 의무의 양과 질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세대 간 형평뿐만 아니라 세대 내 형평과도 관련이 있다. 본질적으로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세대가 누리는 환경적 이익의 균형을 세대 간 형평으로 이해한다면 과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리우선언은 원칙7에서도 차별적 공동책임의 근거로서 '선진국들이 지구환경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세대 내 형평의 근거로서 세대 간 형평을 제시하면서도 현재세대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과거에 대한 책임이 선결 조건임을 선언한 것이다.³⁷⁾

35) Franck, T. 1995. "Equity in International Law" In Jasentuliyan, N.(ed.).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p.48.

36) Black, H.C. 1990. *Black's Law Dictionary*. West. p.540.

37) 여기서 '책임'에 관한 개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던 과거의 오염행위에 대하여 현재에 와서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선진국이 자발적으로 과거 오염행위에 대하여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차별적 공동책임을 법적 의무로서 수용하는 것이 곧 형평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책임이 법적 성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원상. 2006.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 「국제법 평론」 국제법평론회. 24: 167-171 참조.

III 국제법상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별기준

1. 국제환경법상 구별기준의 모호성

국제환경법의 선진국 및 개도국 지위부여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개념정의방식(Definition Method)으로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개념이나 요건 등을 조약에 명시하는 방법이다. 개도국의 정의규정으로 가장 근접되었다고 평가되는 몬트리올의정서 제5조(개도국의 특수사정)는 "개도국인 당사자는 …" 또는 "규제물질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산정치가 0.3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라 하여 개도국에게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³⁸⁾ 즉 몬트리올의정서의 회원국들은 국제연합의 명부에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협약 해당국가가 개도국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또는 일정 수준의 1인당 CFCs 소비량을 가지는 국가에게 개도국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³⁹⁾ 그러나 전자의 경우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객관적 개념정의라 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입증 절차 및 입증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명단작성방식(List Method)으로 모호하거나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을 분리시켜 협약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으로서 부속서 I 국가들의 명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명백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최초 선진국 명단 작성과 신규 선진국 지정이 결국은 국가 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는 자동채택방식(Auto-election Method)으로 회원국 중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바젤협약의 경우 OECD, EC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부속서7국가에 편입된다. 이 방식은 선진국 판단 요건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OECD와 EC의 비회원국으로서 경제적·기술적 능력을 구비한 국가의 무임승차 우려가 있고 그가입여부가 선진국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환경법에 통용되는 선진국·개도국 지위의 구별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이 아무런 기준 없이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위는 사안별(case-by-case)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8) Rajamani, L. 2006. *Differential Treatmen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 Press. p.166.

39) Opinion of Susan Biniaz in A.S.I.L., *op. cit.*, p.360.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국제환경협상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 지위는 무엇인가. 선진국 개도국 국제환경법 원칙인 차별적 공동책임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지위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에 의하면 개도국과 선진국의 구분은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차별적 공동책임’이 선진국에게 무거운 환경의무를 지우는 근거로서 첫째 현재 환경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개도국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것과, 둘째 선진국의 발전은 과거의 오염행위에 기인한 것이기에 현재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자발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꼽고 있다. 환언하면 국제환경법은 선진국의 요건으로 현재의 환경의무이행능력이 우월할 것 또는 과거의 환경오염 행위국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환경협약은 그 어떠한 객관적 기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오로지 협상에 의한 선택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경제지표에 의해 판단할 수 있어 국제경제법 분야의 기준을 원용할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 과거 환경오염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법적 차별화의 대상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면서도, 그 구분기준이 모호하고, 더구나 개도국 내에서도 최빈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그룹을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면, 국가지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이 경우 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위가 결정된다면 타국과의 관계가 엇갈려 혼란스러워질 것이다.⁴⁰⁾ 따라서 차별적 공동책임의 이행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일반적인 구분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그 선결문제라 할 수 있다.

2. 경제지표에 의한 분류

UN에서 사용되는 용례에 의하면 개도국이란 1인당 국민총생산(GNP)에 있어 차이가 있는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제의 상당부분이 아직 낙후되어 있고 국민의 다수가 매우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경제를 다루는 GATT 및 WTO협정 그 어디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어느 국가가 개도국에 해당하는가는 미결

40) 1991년 북경각료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은 그 서문에서 “우리 41개국 개도국 각료들은..”이라 개도국임을 자칭하여 선진국과 차별화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범주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참여한 국가들은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카메룬,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쿠바,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피지, 가나,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캐나다, 말레이시아, 몰리,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싱가포르, 수단, 탄자니아, 태국, 우간다, 베네수엘라, 유고, 자이르, 짐바브웨 등이다. 국제안전기획부, 1994. 「국제환경조약집」(상)

문제로 남게 된다.⁴¹⁾ 한편 UN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국가그룹을 선진국(developed countries)과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외에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을 포함하는 3분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⁴²⁾ 이후 WTO협정 및 제반 부속서에서도 개도국 외에 최빈국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최빈국의 판정은 UN에 의해 승인된 명부(LDC list)에 따르고 있다.⁴³⁾ 만일 국제환경법 체계에서 현재의 2분법 체계가 아닌 UN의 3분법 체계를 수용한다면 국제환경정책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1) 최빈국

1971년 UN은 경제·사회적 수준이 너무 낮아 그들의 개발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개도국을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으로 분류하였다.⁴⁴⁾ 최빈국 문제의 중요성은 1964년 창설된 UNCTAD에서 언급된 이래 UN총회는 일련의 결의를 통해 최빈국 국가들을 분류해 왔으며,⁴⁵⁾ 1971년 UN 총회는 개발계획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lanning: CDP)에 의하여 보고된 최빈국 명부를 처음으로 승인 공표하였다.⁴⁶⁾ 그 후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인당 GDP, GDP대비 제조업비율, 산업고용비율, 1인당 전기소비량, 수출집약도, 신생아 사망률, 1인당 칼로리 공급량, 문맹률 등을 기준으로 최빈국을 선정하였다. 최빈국의 선정 지표 및 최빈국 지정은 3년마다 재검토되고 있는데 UNCTAD의 최빈국의 선정 및 졸업 기준은 <표1>과 같고 현재의 최빈국목록 국가는 50개국이다.⁴⁷⁾ 선정 기준의 세 가지 지수

41) McGovern, 1995.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Globefield Press. p.9.

42) 1964년 제1차 UN무역개발회의(UNCTAD) 회의 결과 채택된 최종 의정서에서 최빈국 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언급된 이후, UN은 매우 낮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과 매우 높은 문맹률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의 낮은 비중 등을 기준으로 최빈국 명부(LDC list)를 작성해 오고 있다.

43) WTO설립협정 제11조 제2항 참조.

44) 김영생. 2001. "개도국의 무역, 환경 및 개발의 연계" 「사회과학논집」 13: p.46. 수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5) Fatouros, A.A. 1986. "Developing States" In Verrihardt, R.(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 p.73.

46) American Law Institute. 1987.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Nations*, Vol. 2,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p.304.

47) 기존 49개국에서 2005년 에디오피아가 추가되면서 50개국이 되었다.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05, *Statistical Profil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United Nations, at http://www.unctad.org/en/docs/ldcmsc20053_en.pdf. (2007년 10월 31일 최종 검색) 참고로 최빈국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니, 부坦,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갑비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레소토, 리아비리아, 마다가스카르, 밀라이, 말리, 몰디브,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솔로몬, 소말리아, 수단, 토고, 투발루, 우간다, 탄자니아,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이다.

가 기준치에 근접한 경우에 추가로 취약성 지표들을 고려해 최빈국의 출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⁴⁸⁾

표1 UN의 최빈국 출입 기준

기준	1990년대	2000년 이후
1인당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단순평균 · 700\$ 이상(1991년) · 800\$ 이상(1994년) · 900\$ 이상(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단순평균 · 1,035달러 이상
삶의 질 지수 (APQ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때 기대 수명(건강) · 필요량 대비 1인당 하루 칼로리 섭취량(영양) · 초·중·고등교육 등록률(교육) · 성인 문맹률(교육) · 기준치: 단순평균 5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사망률(건강) · 필요량 대비 1인당 하루 칼로리 섭취량(영양) · 초·중등교육 등록률(교육) · 성인 문맹률(교육) · 기준치: 단순평균 68 이상
경제다각화 지수 (EDI: 1990년대) 또는 경제취약성 지수 (EVI: 2000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노동력에서 산업 비중 · 연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UNCTAD의 상품수출집중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제조업 및 비정부서비스 비중 · UNCTAD의 상품 수출집중 지수 · 농업생산 지수의 불안전성 지표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불안정성 지표 · 인구 규모

* 출입기준 미만이 선정기준에 해당함.

자료 : UNCTAD(<http://www.unctad.org>)

WTO는 일반적으로 UN에 의해 지정된 최빈국 명부를 이용하여 최빈국을 분류하되, 개별 협정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빈국을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WTO 보조금협정은 1995년 발효에 맞추어 UNCTAD의 최빈국에 더하여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1,000달러 이하인 국가로서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 등 20개국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WTO 농업협정은 1996년 당시 식량순수입국으로서 바베이도스, 코트디브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온두라스 등 16개국을 추가로 언급하였다.⁴⁹⁾

2) 개도국과 선진국

일반 국제법상 개도국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비경제적인 지표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계량화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에 기인한다.⁵⁰⁾ 다만, 국제경제관련 조약 및 국제기구를 통

48) 임송수, 김상현. 2003. 「WTO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51.

49) 임정빈, 이재욱. 2002. 「WTO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0.

하여 개도국이 언급되거나 선진국을 지정하여 그 외 다수 국가를 개도국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취한다.

UNCTAD가 선진국 분류표를 별도로 마련하였으나 그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UNCTAD가 제시하고 있는 소위 선진시장경제국가(Developed Market Economy Countries: DMEC)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및 EFTA국가,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개도국들은 UNCTAD 내의 개도국 모임인 77그룹⁵¹⁾의 회원국이며 그 수는 133개국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7그룹의 정식회원이었다가 1996년 12월 OECD 가입을 계기로 77그룹에서 이탈한 이래 1997년 11월부터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77그룹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나 되는 산유국에서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정도인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단순히 개도국 그룹으로 분류하기에도 적절치 못하다.

GATT 및 WTO협정에서도 최빈국의 지위 결정에 대해서는 UN의 최빈국 명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⁵²⁾ 개도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회원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자기선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⁵³⁾ 따라서 GATT 및 WTO협정상의 개도국 관련규정은 개도국지위 부여에 관한 GATT 관행에 따라 적용된다. 이에 관한 GATT 관행은 1964년 제1차 UNCTAD회의에서 형성된 개도국의 비공식그룹인 소위 '77그룹'(Group of 77)에의 회원가입방식인 자기선택(self-selection) 및 신규회원선출(co-operation) 방식이 준용되고 있는데, 신규회원이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면 77그룹의 의장이 그룹참여를 요청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위가 부여된다.⁵⁴⁾ 즉 GATT에서의 개도국지위 결정 역시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 없이 체약국의 자기선택에 대한 타 체약국의 묵시적 동의에 입각하고 있다.⁵⁵⁾ 한편 WTO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서도 개도국 지위의 취득기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GATT의 자기선택의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⁵⁶⁾

50) Betz, J. 1995. "Developing Countries" In Wolfrum, R.(ed.), *United Nations: Law, Policies and Practices*. Vol. 1.,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398.

51) 1964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제1회 총회가 끝날 무렵 개도국이 77개국이 선진국에 대한 협상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원래 75개 개도국들의 비공식 모임이었으나 1964년 제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때 한국과 베트남이 참가함으로써 77그룹이 되었다. 1967년 일제리에서 첫 번째 각료회의가 있었고, 1991년 7차 각료회의는 북한(1973년 가입) 평양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2002년 현재 가입국은 133개국이다.

52) 예컨대 WTO 설립협정 제11조 2항은 UN에 의해 최빈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자국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의 필요나 행정적 및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공약 및 양허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3)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evel_e/d1who_e.htm (2007년 10월 31일 최종검색)

54) 최승환. 1998. 「국제경제법」, 법영사, 290p.

55) Long, O. 1985. *Law and its Limitations in the GATT Multilateral Trade System*.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9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대외원조를 위하여 경제개발 수준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주로 1인당 GNP에 근거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으며 다시 개도국을 저소득국가(SILICs)와 중소득국가(SIMICs)로, 선진국을 고소득국가와 고소득 원유수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 부채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GNP 대비 부채비율 50% 이상, 수출 대비 부채비율 275% 이상, 수출 대비 채무비율 30% 이상, 수출 대비 이자지불비율 20%인 경우가 저소득국가에 해당한다.⁵⁷⁾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통계와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GDP규모, 실업률, 대외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개도국, 시장경제전환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⁵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단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개도국으로 보고 있으나⁵⁹⁾ 반대로 OECD 가입사실이 선진국으로의 진입기준으로 보는 절대적인 합의나 기준 또한 없다. OECD는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설치하여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기준은 <표2>와 같다.

표2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도국(영역) 명단

(2004년 현재)

분류	기준	국가 명단
최빈국	-	UNCTAD와 동일한 50국
저소득국가	1인당 GNP \$825 이하	Cameroon, Congo Rep., Côte d'Ivoire, Ghana, India, Kenya, Korea, Dem. Rep., Kyrgyz Rep., Moldova, Mongolia,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Tajikistan, Uzbekistan, Viet Nam, Zimbabwe
중저소득국가	1인당 GNP \$826 - 3,255	Albania, Alger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China, Colombi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Fiji, Georgia, Guatemala, Guyana, Honduras, Indonesia, Iran, Iraq, Jamaica, Jordan, Kazakhstan, Macedonia,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rshall Islands, Micronesia, Fed. States, Morocco, Namibia, Niue, Palestinian Admin. Areas, Paraguay, Peru, Philippines, Serbia & Montenegro, Sri Lanka, Suriname, Swaziland, Syria, Thailand, Tokelau(▪), Tonga, Tunisia, Turkmenistan, Ukraine, Wallis & Futuna(▪)
중고소득국가	1인당 GNP \$3,256 - 10,065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Barbados, Belize, Botswana, Chile, Cook Islands, Costa Rica, Croatia, Dominica, Gabon, Grenada, Lebanon, Libya, Malaysia, Mauritius, Mayotte(▪), Mexico, Montserrat(▪), Nauru, Oman, Palau, Panama, Saudi Arabia (1), Seychelles, South Africa, St. Helena(▪), St. Kitts-Nevis, St. Lucia, St. Vincent & Grenadines, Trinidad & Tobago, Turkey, Turks & Caicos Islands(▪), Uruguay, Venezuela

* (▪)는 국가가 아닌 영역(territory)을 의미함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http://www.oecd.org>)⁶⁰⁾

56) McGovern, *op. cit.*, p.9.

57) Betz, *op. cit.*, p.404.

58) 임정빈, 이재옥, 앞의 보고서, p.12.

59) 현재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30개국이다. at <http://www.oecd.org> (2007년 10월 31일 최종검색)

3) 검토

일반적으로 선진국, 개도국, 최빈국 등의 용어가 개별 국가의 경제적 성장도에 따라 나뉘는 개념으로 통용되기에 국제기구 또는 국제경제법분야에서의 구별기준을 살펴보았으나, 명확한 개념이나 기준을 찾을 수 없고 자기선택에 의한 자율주의에 따르거나 국제기구의 경우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국가그룹을 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 평가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가입국들로부터 가장 많은 견제를 받아 온 국가이다. 그 이유는 1992년 가입 당시에는 OECD 가입국이 아니었기에 부속서1국가(선진국)에서 제외되었으나, OECD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부속서1국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⁶⁰⁾ 결국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부담(2013년~2017년)에는 부속서1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많은 국제환경협약에서 선진국의 의무를 요청받게 된다면 ‘차별적 공동책임’이 요구하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와 환경지표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위를 평가해 본다.

1. 경제지표 분석

1)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경제지표 비교

국민총소득, 1인당 국민소득, 국내총생산, 구매력평가 국내총생산 등의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의 경제수준을 비교하면 <표3>과 같다.

60) http://www.oecd.org/document/45/0,3343,en_2825_293564_2033101_1_1_1_1,00.html (2007년 10월 31일 최종검색).

61) A.S.I.L., *op. cit.*, pp.360-361.

표3 국제 경제지표 현황과 우리나라

(2006년도 기준)

	국민총소득		1인당 국민소득		국내총생산		구매력평가 국내총생산	
	백만US달러	순위	US달러	순위	백만US달러	순위	백만국제달러	순위
미국	13,446,031	1	44,970	10	13,201,819	1	13,201,819	1
일본	4,899,966	2	38,410	19	4,340,133	2	4,131,195	4
독일	3,018,036	3	36,620	20	2,906,681	3	2,616,044	5
중국	2,641,587	4	2,010	129	2,688,071	4	10,048,026	2
영국	2,425,210	5	40,180	16	2,345,015	5	2,111,581	6
프랑스	2,297,748	6	36,550	22	2,230,721	6	2,039,171	7
이탈리아	1,875,641	7	32,020	28	1,844,749	7	1,795,437	8
스페인	1,200,704	8	27,570	33	1,223,988	9	1,243,440	10
캐나다	1,177,445	9	36,170	23	1,251,463	8	1,140,445	14
인도	906,537	10	820	161	906,268	12	4,247,361	3
브라질	892,806	11	4,730	92	1,067,962	10	1,708,434	9
우리나라	856,565	12	17,690	49	888,024	13	1,152,356	13
러시아	822,364	13	5,780	79	986,940	11	1,704,756	11
멕시코	820,319	14	7,870	73	839,182	14	1,201,838	12
호주	738,479	15	35,990	24	768,178	15	728,340	16

자료 : 세계은행(www.worldbank.org)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국가들은 단순히 국민총소득 상위 15개국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은 경제 선진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G7 회원국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은 소위 BRICs 국가라 불리는 개도국의 대표국인데 특히 브라질, 인도, 중국은 개도국임을 자처하며 1991년 북경선언을 주도하였고 이후 국제환경협상에서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변하였다.⁶²⁾ 이 중에서 러시아의 행보를 주목할 만한데, BRICs의 일원인 러시아는 1997년 이후 G7에 가입하여, G7은 G8이 되었다. 즉 개도국에서 선진국을 자처하게 된 경우이다. 호주는 2006년 2월 ‘G10 국세청장회의’에 우리나라와 함께 초청받았고,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함께 OECD 국가로서 교토의정서 부속서1 참여를 거부한 국가이다.

62) 아이러니하게도 BRICs는 개도국 중 최상위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들이며, 골드먼삭스는 자체 보고서에서 50년 후 G7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빠지고 그 대신 브릭스(BRICs)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2003년 10월 7일자)

2) 검토

지구상에 몇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찾을 수는 없지만, 192개 UN회원국 외에 대략 5~6개국 정도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을 기준하여 <표3>의 15개국 모두가 경제력은 전체 8% 이내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이 되고, 이들 간에 선진국과 개도국을 굳이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BRICs의 중국은 전체 4위이고 브라질과 인도 역시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경제규모인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에서 BRICs와 G7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는 49위로 BRICs보다는 G7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명백히 선진국이라고도 개도국이라고도 할 수 없는 중간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환경지표 분석

1)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환경지표 비교

우리나라 환경오염지표의 국제적 수준은 어떠한가. <표4>가 보여 주듯이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위, 15년간 배출량 증가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종 비교 수치에서 최상위급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⁶³⁾

표4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도

(2004년도 기준)

지표	규모	순위	비교
배출량(04)	5.9억 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이탈리아(13.6)
증가율(90-04)	△90.1%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1인당 배출량(04)	12.28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90-04)	△69.5%	1위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GDP당 배출량(04)	0.59톤/천\$	8위	1위 호주(0.80)
증가율(90-04)	△32.9%	5위	1위 터키(△13.4), 2위 포르투갈(△21.42)

자료 : 환경부⁶⁴⁾

63)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http://me.korea.kr/me/jsp/me1_branch.jsp?__action=news_view&__property=sp_sec_1&__id=155215366 (2007년 10월 31일 최종검색)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⁶⁴⁾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le Index: ESI) 결과는 우리나라 환경수준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표5 WEF 환경지속성지수 구성요소별 우리나라의 순위

구성요소	2005년 순위(146개국 중)	2002년 순위(142개국 중)
환경의 질	137	136
환경부하	146	138
취약인구집단 보호	67	21
사회·제도적 역량	18	30
지구적 책무 수행	78	123
종합평가(ESI)	122	135

자료 : WEF 2005 보고서⁶⁵⁾

<표5>에서 보듯이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하여 2002년도 평가에서 142개국 중 135위였던 것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고 조사에 포함된 29개의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캐나다(6위), 호주(13위), 일본(30위), 독일(31위), 프랑스(36위), 미국(45위), 영국(66위), 이탈리아(69위), 스페인(76위) 등 경제지표 기준 15위 이내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환경수준을 가지고 있다.

표6 WEF 지표별 평가결과

구성요소 (Component)	지표 (Indicator)	2005년 순위 (146개국 중)	2002년 순위 (142개국 중)
환경의 질 (Environmental System)	대기질	79	54
	수량	133	121
	수질	7	42
	종다양성	142	139
	토양보전	135	129
환경부하 (Reducing Environmental Stresses)	대기환경부하	142	139
	수질환경부하	140	139
	생태계부하	144	139
	폐기물과 소비	38	109
	인구부하	19	29
	자연자원관리*	145	-

64) 고윤화, "2100년 한반도 기온 3℃ 상승땐 연58조 피해" 환경부 테마기획,

http://me.korea.kr/me/jsp/me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sp_sec_1&_id=155224792 (2007년 10월 31일 최종검색)

65) http://www.yale.edu/esi/ESI2005_Main_Report.pdf (2007년 10월 31일 최종검색)

표6 WEF 지표별 평가결과 (계속)

구성요소 (Component)	지표 (Indicator)	2005년 순위 (146개국 중)	2002년 순위 (142개국 중)
인구집단의 취약성 (Reducing Human Vulnerability)	기초적인 생활유지	41	25
	환경보건수준	30	26
	환경관련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134	-
사회·제도적 역량 (Social and Institutional Capacity)	과학·기술	6	11
	사회적 토론능력**	-	80
	환경거버넌스	23	47
	민간영역의 환경적 대응	18	31
	생태효율성	119	109
지구적 책무수행 (Global Stewardship)	국제협력 참여	70	36
	온실가스 배출	99	104
	국경을 넘는 오염부담	36	134

* 2005년 평가에 신설된 지표, ** 2005년 평가에서는 없어진 지표

자료 : WEF 2005 보고서⁶⁶⁾

<표6>은 우리나라의 지표별 순위인데 '환경의 질', '환경부하' 등 환경수준에 있어서는 최하위권에 있으나 '사회제도적 역량'과 '지구적 책무수행' 등 환경보호능력은 중상위권인 불균형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 검토

<표5>의 환경지속성과 <표6>의 환경수준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서 개발중심의 환경오염국가 즉 개도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차별적 공동책임이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환경오염지수'가 아니라 '역사적 환경오염수준'과 '현재의 국제환경의무 이행능력'이다.

역사적 환경오염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Pew Center의 보고서는 1950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한국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한 아르헨티나보다도 순위가 높은 25위이며 전 세계 배출량의 0.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⁶⁷⁾ 여기서 역사적 책임이 의미하는 과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책임 중 '과거'의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 국제환경법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환경을 도외시한 채 개발행위에 몰두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즉 18세기 중엽부터 자구환경위기를 인식하고 국제법규범을 준비하기 시작

66) Ibid.

67) Claussen, E. and L. Mcneilly. 2001. *The Complex Elements of Global Fairness*,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p.28.

한 20세기 중반까지를 ‘과거’라고 볼 수도 있다.⁶⁸⁾ 그러나 환경문제의 다양성만큼이나 수많은 국제조약이 존재하고 그 체결 및 발효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은 구체적인 환경문제마다 달리 산정하여야 하고 해당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의 발효시점 이전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역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표6>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과학기술력이 세계 6위에 랭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환경기술의 선진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환경수준의 후진성이 아니라 환경의 역사적 오염정도 및 환경기술능력의 선진성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국제환경법상 선진국의 지위에 있다고 파악된다.

V 맷음말 :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 및 정책적 선택

국제환경법 분야가 발전되기 이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 및 경제부흥의 기치 아래 발전된 국제법 특히 국제경제법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을 별도의 국가집단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은 경제적 기준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치적·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도국은 GATT/WTO 체제의 ‘차별적이고 특별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부터 국제환경법의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으로부터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이 고유한 권리인 듯 차별적 법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법리가 국제법의 근간인 주권평등의 예외 또는 실질적 보완으로서 정당화된다 할지라도, 그 이행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못한 현실은 또 다른 혼란을 양산하고 있다.

국제환경법분야나 국제경제법분야 모두 자기선택의 원칙(self-selection principle)과 국가 간 협상에 의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위가 결정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자기선택의 원칙이 있다할지라도 매 사안별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변경함은 국제적 신뢰성을 실추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환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위 주장 간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기본적 입장을 정립해

68) 서원상, 앞의 논문, p.167.

야 한다. 필자의 솔직한 심정은 우리나라가 개도국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의 수집, 논리의 개발을 바탕으로 우수한 협상능력을 발휘하여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좀 더 가벼운 국제의무를 부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경제지표 및 환경지표의 분석결과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논리를 준비하여야 할 단계임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지난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연례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멕시코, 데카 4개국의 IMF 출자할당액(quota)을 증액하는 안이 통과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⁶⁹⁾

한편으로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굳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견제를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온실가스배출 1위인 미국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꼬집어 교토의정서에 반대하였는데,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선진국인 미국과 개도국인 인도, 중국 등 모든 국가의 노력이 집약되어야만 한다.⁷⁰⁾ 국제경제법 분야에서도 오랜 기간 다자 간 관세협상이 지속되면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일반특혜관세(GSP) 관세율의 차이가 많이 좁혀져 GSP의 특혜가 침식되었다고 하며,⁷¹⁾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GSP의 강화가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선진국들의 반대로 많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개도국 지위의 수성이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국제환경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되 개도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의무가 특정 선진국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협상을 이끌어 가고, 내부적으로는 세계경제포럼 지표에 나타난 세계 6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기술을 상품화하는 기업활동 봄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GE사는 2005년 'Green is Green' 즉 '환경은 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아이템 20가지를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고 한다.

국제법이 '국가주권의 평등' 원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현대 국제법상 국가들은 '공통관심사'(common concerns)의 해결을 위하여 그 주권 제한을 감수하여 왔다. 특히 인류의 생존이 달려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도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방어적이기보다는 적극적 대외환경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69) IMF에서 쿼타(quota)의 규모는 표결권의 수를 좌우하는데, 각국은 250표에 출자액 10만 SDR(특별인출권) 당 1표를 추가로 획득하게 된다. 성재호. 2006. 「국제경제법」 박영사. p.19.

70) 김찬우. 2001. "기후변화협상과 한국" 「세계경제」 2001년 1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55.

71) 강문성. 2004. "개도국 특혜침식" 「OECD FOCUS」 2004년 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22.

참고문헌

- 강문성. 2004. "개도국 특혜침식" 「OECD FOCUS」 2004년 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생. 2001. "개도국의 무역, 환경 및 개발의 연계" 「사회과학논집」 13. 수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정균, 성재호. 2006. 「국제법」 박영사.
- 김찬우. 2001. "기후변화협상과 한국" 「세계경제」 2001년 1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노명준. 2003. 「국제환경법」. 박영사.
- 서원상. 2006. "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 「국제법평론」 제24호. 국제법평론회.
- 성재호. 2006. 「국제경제법」 박영사.
- 이재곤. 1999. "스톡홀름환경선언, 세계자연현장 및 리우환경선언의 국제환경법적 비교연구" 「법학연구」 9(2)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임송수, 김상현. 2003. 「WTO개도국 지위의 논리와 협상 대응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이재옥. 2002. 「WTO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승환. 1998. 「국제경제법」 법영사.
- Alberts. 1992. "Technology Transfer and its Ro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 Structural Dilemma"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6.
- American Law Institute. 1987.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Nations*, Vol. 2.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Antrium, L. and J. Sebenjus. 1983. "Incentives for Ocean Mining under the Convention" In Oxman, B. et al. (eds.) *Law of the Sea: U.S. Policy Dilemma*. ICS Press.
- A.S.I.L. 2002.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oceedings of the Ninety-Sixth Annual Meeting of the A.S.I.L.*
- Betz, J. 1995. "Developing Countries" In Wolfrum, R.(ed.) *United Nations: Law, Policies and Practices*, Vol. 1.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Black, H.C. 1990. *Black's Law Dictionary*. West
- Brownlie, I. 199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 Press.
- CISDL,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rigins and Scope" A CISDL Legal Brief(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http://www.cisdl.org/pdf/brief_common.pdf

- Claussen, E. and L. Mcneilly. 2001. *The Complex Elements Of Global Fairness*.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
- Fatouros, A.A. 1986. "Developing States" In Vernhardt, R.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
- Franck, T. 1995. "Equity in International Law" In Jasentuliyana, N.(ed.)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 French, D. 2000. "Developing Stat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estion* 49.
- ICJ Report 1969.
- ICJ Report 1982.
- McGovern. 1995.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Globefield Press.
- OECD.1994. *Environmental Principles and Concepts*. COM/ENV/TD(93)117/REV2
- Porras, I. 1994. "The Rio Declaration : A New Basi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ands, P.(ed.) *Greening International Law*, The New Press.
- Rajamani, L. 2006. *Differential Treatmen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xford Univ. Press.
- Rossi, C.R. 1993. *Equity and International Law - A Legal Realist Approach to the Legal Process of International Decisionmaking*, Transnational Publishers.
- Sands, P. 2003.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95. "International Law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Emerging Legal Principle" In W. Lang (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Graham & Trotman.
- _____. 1994.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 Introductory Overview" In Sands, P.(ed.) *Greening International Law*. The New Press.
- UNCTAD. 2005. *Statistical Profil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United Nations. http://www.unctad.org/en/docs/lcdmisc20053_en.pdf.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 Press
- Weisslitz, M. 2002. "Rethinking the Equitabl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Differential versus Absolute Norms of Compliance and Contribution in the Global Climate Change Context" *Colorado Journal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Policy* 13.
- http://me.korea.kr/me/jsp/me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sp_sec_1&_id=155224792
- http://me.korea.kr/me/jsp/me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sp_sec_1&_id=155215366

http://www.oecd.org/document/45/0,3343,en_2825_293564_2093101_1_1_1_1,00.html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evel_e/d1who_e.htm

http://www.yale.edu/esi/ESI2005_Main_Report.pdf